



美 정부, IRA '해외우려기관(FEOC)' 에 대한 해석지침(안) 발표

2023. 12. 1.(현지시간) 美 재무부 및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IRC Section 30D)의 주요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에 대한 해석지침(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지난 2023. 3. 31. 발표된 세부지침에 의하면, '2014. 12. 31. 이후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된 광물 및 제조·조립한 부품이 내재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등은 세액공제 대상인 친환경차량(new clean vehicle)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FEOC의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금번에 발표된 해석지침(안)에서 FEOC의 판단기준과 이행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 제공되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美 에너지부의 FEOC 해석지침(안) 내용

-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FEOC란 해외 기관(Foreign Entity) 중 해외 우려국 정부(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 Covered Nation) 관할(Jurisdiction)에 속하거나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Direction) 해외 기관을 의미합니다. 각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외 기관(Foreign Entity)

- (1) 외국 정부 (2) 미국 영주권·시민권 또는 기타 보호를 받는 개인이 아닌 자연인 (3) 외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주된 사업장을 둔 파트너십, 단체, 기업 및 기타 개인들의 조합 (4) 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나 (1)~(3)에 해당하는 해외 기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 받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② 해외 우려국 정부(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 Covered Nation)

- 해외 우려국의 (1) 중앙·지방 정부 (2) 중앙·지방 정부의 대리 기관 (3) 지배·집권 정당 (4) 전·현직 고위 정치인을 의미합니다.
- 위 항목 중 (4)전·현직 고위 정치인은 외국 정부 및 지배·집권 정당의 고위 공직자를 의미하며, 해당 고위 공직자의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한편, 대상이 되는 해외 우려국(Covered Nation)으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해당됩니다.

③ 관할권(Jurisdiction)

- 해외 기관이 (1) 우려국에 설립,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2) 배터리의 핵심 광물, 부품, 구성 물질과 관련하여, 해외 기관이 해당 핵심 광물, 구성 요소 또는 소재를 추출, 처리, 재활용 및 조립하는 활동을 우려국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④ 소유 · 통제 · 지시(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Direction)

- '소유 · 통제 · 지시'란, 해외 우려국 정부가 (a) 해외 기관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누적 보유(cumulatively held)하거나 (b)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및 조립 등 생산 전반에 대한 유효 통제권(effective control)을 보유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a) 해외 기관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누적 보유하는 경우

- FEOC에 의한 지배 여부는 FEOC의 해외 기관에 대해 합산하여 직 · 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 해외 기관의 간접 지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모기업이 자회사 법인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는 모기업과 동일법인으로 간주하여 자회사의 모든 지분을 모회사에 귀속합니다.

✓ 모기업이 자회사 법인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50% 미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간접 소유권은 각각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귀속합니다.

- 즉, 우려국이 아닌 제3국에서 설립된 기업이라도 해외 우려국 정부가 직 · 간접적으로 합산하여 25% 이상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FEOC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려국에 설립된 모기업이 FEOC에 해당하더라도 그 해외 자회사 법인이 곧바로 FEOC 해당하지는 않으며, 해당 법인이 해외 우려국 정부 관할에 속하거나 해외 우려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합산하여 해외 자회사 법인에 대한 25% 이상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FEOC에 해당합니다.

- 한편,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의 경우에도 해외 우려국 정부가 직 · 간접적으로 합산하여 합작투자회사의 25% 이상을 보유하여 통제하면, 해당 합작투자회사는 FEOC에 해당합니다.

(b)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및 조립 등 생산 전반에 대한 유효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

- 기술 제휴의 경우, 해외 기관의 FEOC 해당 여부는 해외 우려국 정부가 배터리 핵심 광물, 부품소재 생산 전반에 대한 유효 통제권을 보유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 이 때, 유효 통제권이란 (1) 핵심광물,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생산량 및 생산시기를 결정하거나 (2) 핵심광물, 부품 또는 구성물질을 자체 사용 및 판매하거나 (3) 생산 현장의 모든 구역을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거나 (4) 우려국 정부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수출 통제 및 기타 사용제한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주요한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 유지 및 보수하거나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에 접근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해석지침(안)을 통해 FEOC의 정의와 범위가 예전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먼저 지침이 발표되었던 미국 CHIPS Act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기관의 지분구조를 파악할 때 단순히 직접적 지분관계만이 아니라 간접적 지분구조나 의결권의 존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내 기업들의 시사점

-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으므로, 장래에는 금번 해석지침(안)을 토대로 소재 구입 또는 합작 투자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FEO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거래의 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투자구조를 수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美 재무부는 FEOC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칙 제정 시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공표하여 친환경차 제조업체의 배터리 구성품(2024년부터)과 핵심 광물 등 배터리 소재(2025년부터)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수행의무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FEOC 요건의 준수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 한편, 美에너지부가 발표한 해석지침(안)은 초안 단계로서 현재 2024. 1. 3.까지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필요한 경우 美에너지부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초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발표될 최종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Contacts

정재웅

T. (+82) 2 6003 7049

파트너변호사

E. jwjeong@yoonyang.com

전완규

T. (+82) 2 6003 7121

파트너변호사

E. wkjeon@yoonyang.com

이성범

T. (+82) 2 6182 8527

파트너변호사

E. sblee@yoonyang.com

이승주

T. (+82) 2 6003 7074

선임외국변호사

E. jason.w.lee@yoonyang.com

박영웅

T. (+82) 2 6182 8348

변호사

E. parkyw@yoonyang.com

김정주

T. (+82) 2 6182 8589

회계사

E. kimjji@yoonyang.com